

KIEP

지역경제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2011년 3월 18일

ISSN 1976-0507 Vol. 5 No. 8

EU의 그린조달제도 운영 현황과 시사점

조 미 진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부연구위원 (mcho@kiep.go.kr, Tel: 3460-1152)

박 예 리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전문연구위원 (hrpark@kiep.go.kr, Tel: 3460-1029)

-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정부조달 분야에서도 환경을 고려한 그린조달(GPP: Green Public Procurement)이 확산되고 있음.
 - 그린조달의 확산에 따라 해외 정부조달시장의 성공적인 진입을 위해서는 해당 시장의 환경 관련 규정 및 운영체계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고 있음.
- 지난 2011년 2월 한·EU FTA 동의안의 가결로 한·EU FTA의 발효 시점이 가시화됨에 따라 유럽 정부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우리 기업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유럽의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약 2조 유로로 총 GDP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유망한 잠재 시장임.
 - 그러나 유럽은 환경의식이 높고 환경 관련 규정이 엄격하여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 없이는 성공적인 진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EU의 그린조달은 EU 환경총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2008년에 도입된 ‘환경개선을 위한 공공조달정책(Public Procurement for a Better Environment)’을 중심으로 공공조달지침, 각종 환경기준, 국제협약, EU 차원의 발전 전략, 각국의 개별법 등이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현재까지 EU의 그린조달정책은 권장안으로서의 효력만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기준 적용 또한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린조달 이행여부와 이행범위 등은 각 회원국과 구매 당국의 재량에 따라 결정됨.
- 유럽연합의 그린조달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유럽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 EU의 환경기준 및 관련 규정 숙지 ▲ 환경기술에 대한 개발 및 투자 확대 ▲ 시장 특성별 차별화된 진출 방안 ▲ 현지 네트워크 구축 등의 전략 마련이 요구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검토 배경

-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환경 보호와 에너지 보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신국가 발전 패러다임을 발표한 바 있음.
-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정부조달에서도 그린조달(GPP: Green Public Procurement)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그린조달 확산에 따른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음.
- 2011년 2월 한·EU FTA 동의안의 가결로 한·EU FTA 발효 시점이 가시화됨에 따라 유럽시장 진출에 대한 우리 기업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특히 유럽의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약 2조 유로로 총 GDP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유망한 잠재 시장임.
- 그러나 유럽은 환경의식이 높고, 환경기준이 잘 정립되어 있어 유럽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는 접근이 어렵고, 더욱이 정부조달 시장의 환경기준은 보다 엄격함.
- 유럽의 그린조달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유럽의 그린조달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전략 마련이 시급함.
- 이에 본고에서는 유럽 그린조달제도 및 운영 현황을 고찰해봄으로써 우리 기업의 그린조달시장 진출확대 방안과 정부의 정책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 EU 그린조달제도 개요

가. 그린조달의 정의 및 목표

- EU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린조달은 ‘환경을 고려한 공공조달’로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물품 및 서비스, 용역 중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물품 및 서비스, 용역을 조달하는 과정을 일컫음.¹⁾

1) Communication on Public Procurement for a better environment(COM (2008) 400)에서는 그린조달을 “a process whereby public authorities seek to procure goods, services and works with a reduced environmental impact throughout their life cycle when compared to goods, services and works with the same primary function that would otherwise be procured.”라고 정의하고 있음.

- 이는 좁은 의미로 천연자원 보존, 에너지 효율성 제고, 환경제품의 활성화, 이산화탄소 배출감소, 유해물질 방출감소, 조달비용 절감 등의 목적을 가지는 공공조달로 볼 수 있음.
- 그러나 EU에서는 이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그린조달을 인식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그린조달을 통해 환경 및 에너지 보전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 효과를 동시에 고려함.

■ EU에서는 그린조달에 대해 조달가치(value for money)를 우선으로 하는 전통적 조달 개념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조달(sustainable procurement)' ²⁾의 개념으로 인식 전환하고 있음.

-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속가능한 조달은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환경, 사회·보건, 정치적 효과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함.

표 1. 지속가능한 조달의 목표

분야	효과
경제	° 기업혁신 촉진 ° 경쟁을 통한 환경기술의 가격 하락
환경	° 정부의 환경정책의 목표 달성 ° 민간부분의 그린구매 유도 ° 환경의식 고취
사회·보건	° 삶의 질 향상(유해물질 감소, 쾌적한 환경 등) ° 민간부분의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환경기준 향상
정치	° 환경보호,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신호 역할

자료: European Commission.

나. 그린조달제도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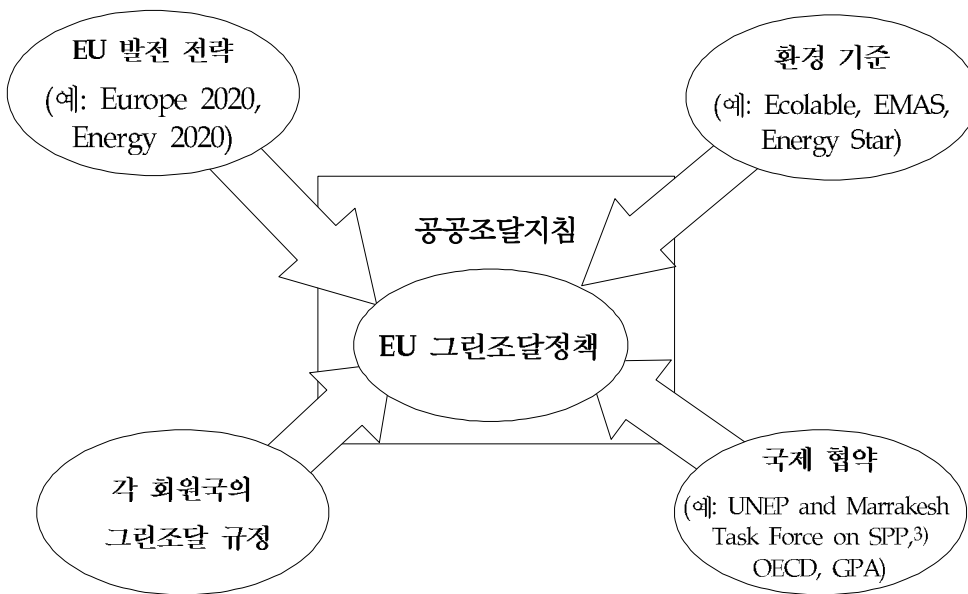
■ EU의 그린조달 담당기관은 EU 환경총국으로, 그린조달정책의 수립, 규정 마련, 각 회원국 그린조달 실행계획 관리 및 장려 등의 역할을 수행함.

- 각 회원국별 그린조달 운영은 공공조달 담당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조달정책의 운영원칙은 EU 공공조달지침을 따름.

2) EU 집행위원회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공공조달(SPP: 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이라 함은 공공구매당국이 물품 및 서비스, 용역을 조달하는 모든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요인인 경제, 사회, 환경적인 요인을 모두 고려하는 것임.

- EU의 그린조달제도는 그린조달정책을 중심으로 공공조달지침, 관련 환경기준, 국제협약, EU 차원의 발전 전략, 각 회원국의 규정 등 여타 규정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음(그림 1 참고).
- 그러나 현재까지 EU의 그린조달정책은 권장안으로서의 효력만을 가지고 있고, 환경기준의 적용 또한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린조달의 이행여부와 이행범위 등은 각 회원국과 구매당국의 재량에 따라 결정됨.

그림 1. EU 그린조달제도 운영 체계



자료: 필자 작성.

다. 그린조달 관련 규정 및 정책

- EU의 그린조달 관련 규정 및 정책은 △ 공공조달지침 △ 그린조달정책 △ 그린조달과 관련된 환경기준 등 크게 세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공공조달지침은 EU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계약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린조달정책은 친환경 물품 및 서비스의 조달을 촉진하고자 정부조달 중 환경기준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있음.

3)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을 위한 마라케시 태스크포스(MTF on SPP: The Marrakech Task Force on Sustainable Public Procurement)는 선진국, 개도국 등의 지속가능한 공공조달을 위한 국제적 계획임.

- 한편 그린조달 관련 환경기준은 그린조달 이행 시 필요한 각 부문의 환경기준으로서 공공조달 단계별로 적용됨.
-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음.

▲ 공공조달지침

- EU 공공조달시장 단일화와 경쟁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지침으로, 동 지침의 목표는 공정하고 개방적인 경쟁 체제를 도입하여 공급자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조달기관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있음.

- 기존에는 물품, 공사, 용역, 유틸리티(물, 에너지, 운송, 통신 등의 분야) 등 4개의 조달대상별 지침과 2개 조달구제 절차에 관한 지침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2004년 개정 시 물품, 공사, 용역 지침이 통합되어 총 4개 지침이 효력을 가짐.

표 2. EU 공공조달지침

과거	현재(2004년 개정 이후)
○ 물품: Directive 93/36/EEC (The Public Supply Directive) ○ 공사: Directive 93/37/EEC (The Public Works Directive) ○ 용역: Directive 92/50/EEC (The Public Services Directive)	- Directive 2004/18/EC * 물품·공사·용역 조달계약 통합지침(공공 분야)
○ 유틸리티: Directive 93/38/EEC (The Utilities Works Directive) *물, 에너지, 운송, 통신(텔레콤) 분야	- Directive 2004/17/EC * 물, 에너지, 운송, 우편서비스 등 사업운영자의 조달절차 지침 (유틸리티 분야)
조달구제에 관한 지침 ○ 물품·공사·용역 분야(The Public Remedies Directive): Directive 89/665/EEC ○ 유틸리티 분야(The Remedies Utilities Directive): Directive 92/13/EEC	

자료: European Commission.

- 2004년 공공조달지침이 개정되면서 환경기술 적용, 환경경영 입증, 에코라벨 등 공공조달 전 과정에서 환경기준을 적용할 것을 명문화하였으며, 각 회원국은 이 지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 유럽 정부조달제도의 근간이 되는 공공조달지침에 그린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유럽시장의 그린조달 확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아래 글상자 참고).

글상자 1: 공공조달지침에 포함된 환경 관련 내용

- ° 기술규격에 환경기준 적용(Article 23(3)b)
- ° 에코라벨 사용(Article 23(6))
- ° 계약내용 수행 시 사회적, 환경적인 조건 고려(Article 26)
- ° 입찰자는 환경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입증해야 함(Article 27)
- ° 입찰자는 환경경영수단(environmental management measures)을 통한 계약 이행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함(Articles 48(2)f, 50)
- °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권장기준(award criteria)을 적용해야 함(Article 53)

▲ 그린조달정책

■ EU의 그린조달정책은 2003년 ‘통합제품정책(Integrated Product Policy)’을 시발점으로 2006년 ‘지속가능한 발전정책(EU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의 일환으로 2008년에 도입한 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조달정책(Public Procurement for a Better Environment)’으로 점차 구체화되었음(표 3 참고).

- 현재 EU의 그린조달제도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환경개선을 위한 공공조달정책’은 수치화된 성과 목표 제시, 목표 달성을 위한 절차 및 방법론 제공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과 차별화됨.
- 다만 EU 그린조달정책은 EU 집행위원회의 제안사항으로서 효력만을 가지며 각 회원국에 대한 강제력은 없음.

표 3. EU의 그린조달정책

제정 연도	규정	내용
2003	A Communication on Integrated Product Policy	EU 집행위원회는 각 회원국들에 2006년 말까지 그린 조달을 위한 실행계획(National Action Plans on Green Public Procurement)을 마련할 것을 요청함
2006	EU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EU 집행위원회는 2010년까지 모든 회원국의 그린조달 비중을 가장 우수한 회원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권고함
2008	Communication on GPP “Public Procurement for a Better Environment” ⁴⁾	가장 최근 도입된 정책으로 수치화된 성과목표, 목표 달성을 위한 절차 및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자료: European Commission,

▲ 기타 그린조달 관련 환경기준

■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각 부문별 환경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각 회원국에 권고하고 있음.

- EU의 공공조달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관련 규정은 에코라벨(Ecolabel)⁵⁾과 에너지 스타(Energy Star),⁶⁾ 환경경영시스템(EMAS: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⁷⁾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 지침(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Directive)⁸⁾ 등임.

표 4. EU의 그린조달 관련 환경기준

제정 연도	규정	목표 및 공공조달에 관한 내용
2003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certain hazardous substances (Rohs)	- 전기전자 장비에 유해한 물질 사용 제한을 명시한 지침
2006	Energy End-Use Efficiency And Energy Services	- 에너지 효율성과 에너지 서비스에 관한 지침 - 공공부문의 모범적인 실천을 권고하고 있음
2007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REACH)	- 화학물의 등록 및 관리에 대한 지침
2008	EU Energy Star	- 미국정부와 EU의 합의에 따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에 에너지 스타를 부여함 - 공공조달업체 선택에서 필수 고려 요건임
2009	EU 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EMAS: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 기업과 공공기관들의 친환경 경영을 촉진하도록 하는 시스템임
2009	Clean Vehicle	- 친환경 차량의 확산을 통하여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지침 - 특히 공공 구매당국과 공공서비스 공급자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4) Communication은 EU 집행위원회 권장안으로서의 효력만을 가지며 각 회원국에 대한 강제력은 없음.

5) Regulation (EC) No 66/201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November 2009 on the EU Ecolabel.

6) Regulation No 106/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 Community energy-efficiency labelling programme for office equipment (recast version).

7) Regulation (EC) No 1221/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November 2009 on the voluntary participation by organizations in a Community 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 (EMAS).

8) Directive 2010/31/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2010 on the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표 4. 계속

제정 연도	규정	목표 및 공공조달에 관한 내용
2009	Renewable Energies(RES)	- 재생자원의 활용에 대한 지침 - 공공건물이 재생에너지 활용기준에 부합하도록 유도
2009	EU Ecolabel (Manual for GPP)	-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에 에코라벨을 부여함 - 1992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9년 그린조달에 대한 내용이 추가됨
2009	Ecodesign Directive	- 에너지 소비 경감을 통해 친환경제품의 확산을 촉진
2010	Energy Labelling Directive	- 에너지 효율이 높은 상품군을 중심으로 공공조달이 이루어지도록 촉진하는 지침
2010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Directive(EPBD)	-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위한 지침 - 특히 공공당국이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 지침에 따르면 2018년 12월 31일 이후 공공조달이 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 제로 에너지 기준을 적용함

자료: European Commission.

- 이 밖에 식품 관련 규정(Food Regulations), 폐기물 처리(Waste Directives), 목재(Timber), 열병합 발전(Cogeneration) 등에 대한 별도의 개별 규정을 두고 있음.

3. ‘환경개선을 위한 공공조달정책’의 주요 내용

-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 유럽의 그린조달제도는 ‘환경개선을 위한 공공조달정책’을 중심으로 공공조달지침, 각종 환경 관련 규정 등이 보완관계를 가지며 운영되고 있는바, 이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개괄함으로써 유럽의 그린조달제도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 이 정책에 따른 그린조달 목표는 2010년까지 그린조달의 비중을 총 입찰의 5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며, 이후 매년 그린조달 우수이행국으로 선정된 국가를 기준으로 목표를 재설정함.
- 그린조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안은 △ 11개 우선품목(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공통 그린조달 기준(GPP criteria) 수립 △ 그린조달을 위한 법률적, 운영 방법 교육 실시 △ 모니터링 지표 개발을 통한 감독 및 사후 평가 등이며, 각 실행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가. 그린조달의 기준

■ 그린조달 기준(GPP Criteria)은 계약담당자가 실제로 적용하는 기준으로, 입찰 서류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환경기준임.

- 각 회원국의 환경기준과 EU의 그린구매 정책을 바탕으로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의견수렴⁹⁾을 통하여 수립됨.

■ 우선 11개 물품 및 서비스 군에 대해서 경제, 환경, 그린조달 기준의 활용도, 정치적 민감도 등이 고려되어 구체적인 그린조달 기준이 마련됨.

- 11개 물품 및 서비스 군에는 종이류, 세탁제품, 사무기기, 건축, 운송, 가구, 전자기기, 요식 및 급식, 섬유, 원예 및 조경, 의료분야 등이 포함됨.
- 이들 우선품목에 핵심기준(core criteria)과 포괄적 기준(comprehensive criteria)이 제시됨.

글상자 2: 그린조달기준(GPP criteria) 예시

운송 (승객용 차량 등)	
Core Criteria	Comprehensive Criteria
1. CO₂ 배출 -신규 차량은 130g/Km를 초과할 수 없음 -새로운 밴은 175g/Km을 초과할 수 없음 * 낙찰 시 추가 고려사항 -신재생 에너지 사용능력 -소음 발생 수준	1. CO₂ 배출 -신규 차량은 130g/Km를 초과할 수 없음. -새로운 밴은 175g/Km을 초과할 수 없음. 2. 연소가스 배출 -유럽의 표준을 따라야 함. * 낙찰 시 추가 고려사항 -신재생 에너지 사용능력 -소음 발생 수준 -더 낮은 CO ₂ 배출, 기어 교체 표시, 타이어 모니터링 시스템 등 -에어컨 가스, 윤활유 기름, 차량 타이어

9) 의견수렴은 온라인 질의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질의 내용은 1) 기관에 대한 질의, 2) 환경정책 및 조달정책의 이행상황, 3) 최근 조달계약에서 적용된 그린조달 기준 등임.

- 핵심기준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요소를 중심으로 비용 증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최소 기준으로, 이는 필수요건에 해당됨.
- 포괄적 기준은 동일 기능의 다른 제품과 비교해서 추가적인 행정비용이나 비용 증가가 초래될 수 있으나, 시장에 그린구매와 관련된 정책적 함의를 주는 기준으로 권장요건에 해당됨.

나. 그린조달 교육시스템

■ EU에서는 그린조달의 활성화를 위해 정책결정자, 구매담당자, 입찰담당자 등 대상자별로 필요한 교육시스템(training toolkit)을 구축하여 실시하고 있음.

- EU 그린조달 교육시스템의 목표는 그린조달의 실현을 저해하는 장벽(constraints)¹⁰⁾을 제거하여 그린조달의 원활한 이행을 촉진하는 것임.
- 교육시스템은 교육 대상자 및 교육 목표에 따라 전략 모듈, 법률적 모듈, 운영 모듈 등 총 3개의 모듈로 구성되며, 각 모듈의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략 모듈(strategic module)

- 이는 그린조달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모듈로, 정부의 조달 관련 의사결정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그린조달의 실현을 위한 전략과 정보를 포함하는 실행계획(action plan)을 제공함.
- 즉, 그린조달의 활성화 및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방법론 및 정부기관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음.

▲ 법률적 모듈(legal module)

- 그린조달의 기획 및 실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모듈로, EU의 조달지침과 각종 환경기준, 각 회원국의 개별법 간 원활한

10) 'Green Public Procurement in Europe 2006'에 따르면 그린조달의 주요 장벽은 다음과 같음. 1) 정책적 지원(political support)의 부족, 2) 환경제품(green product)의 높은 가격, 3) 환경기준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전문가 부족, 4) 정보(information)와 수단(tools)의 부재, 5) 통합적 관리시스템 미비, 6) 교육(training)의 부재, 7) 환경지식(environmental knowledge)의 부재, 8) 관련 당국 간 협조 부족, 9)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환경기준의 미비

융화와 적절한 적용을 위한 법률 정보 및 사례를 제공함.

- 그린조달을 이행하고자 하는 입찰자 및 구매담당자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단계별로 환경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공함.
- o 환경기준이 적용되는 공공조달 단계는 △ 문제에 대한 정의(subject matter) △ 최소기술규격(minimum technical specifications) △ 최소기준(selection criteria) △ 권장기준(award criteria) △ 계약수행조항(contract performance clauses) 등임.

▲ 운영 모듈(practical module)

- 그린조달의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모듈로, 입찰 서류를 작성하는 공공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며, 입찰서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환경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상기 언급한 11개 물품 및 서비스 군에 대한 그린조달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제품의 수명주기원가(life cycle costing) 접근 방식¹¹⁾을 도입한 정부조달 방식을 장려하고 있음.

다. 그린조달 이행 감독시스템

■ 각 회원국의 그린조달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성과분석 보고서를 발간함.

- 다음의 두 가지 지표를 이용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함.
- o 수량적 지표(qualitative indicator): 계량화된 수치를 통해 그린조달정책의 이행 정도를 측정하는 양적 지표임(예: 총 공공조달 대비 그린조달의 비중)
- o 효과중심의 지표(impact-oriented indicator): 그린조달을 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과 경제적 이익을 평가하는 질적 지표임(예: 이산화탄소 방출, 제품수명주기 방식을 이용한 비용 측정 등).

11) 기존에는 제품원가를 생산 공정에만 국한하여 정의하였으나 이는 제품의 수명주기 동안 발생하는 여러 원가를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를 보완한 것이 수명주기원가 기법임. 구매한 제품의 생산, 사용,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 비용을 종합적으로 산출하여 총원가를 비교하는 기법임.

■ 2011년부터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위의 지표들을 이용하여 모든 회원국들의 그린조달 이행현황을 감독할 계획임.

- 핵심 그린조달기준에 부합하는 계약건에 대해 ‘그린조달’로 간주하여 우수 그린조달 이행국가를 선정하고, 이러한 결과는 향후 그린조달 타깃 목표에 반영되어 우수이행국의 그린조달 비중이 향후 그린조달 목표의 기준(Baseline) 목표가 됨.
- 포괄적 그린조달기준에 따라 선정된 그린조달 우수회원국은 그린조달 타깃 목표는 아니나 다른 회원국의 그린조달을 촉진하고 그린조달 혁신활동을 장려하는 목적을 가짐.

■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06년 그린조달 이행평가 보고서¹²⁾의 국가별, 제품별 그린조달 이행현황은 다음과 같음.

- 덴마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영국, 핀란드, 네덜란드, 독일 등이 우수 이행국으로, 벨기에, 라트비아, 헝가리,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은 그린조달 성과가 저조한 국가로 평가됨.
- 품목별로는 사무기기, 종이류, 청소용역, 조경 등이 우수 실행 그룹으로, 섬유, 통신, 의료기기 등은 저조한 실행 그룹으로 나타남.

4. EU 그린조달시장 진출기업에 대한 시사점

가. 유럽 그린조달정책에 대한 이해 및 관련 규정 숙지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의 그린조달제도는 그린조달정책을 중심으로 공공조달지침, 각종 환경기준, 유럽발전전략, 국제협약 등 여러 규정들과 연관되며 다소 복잡한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음.

- 또한 그린조달의 이행여부 및 이행범위 등은 각 회원국 및 구매기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고 각 회원국의 개별법이 우선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각국별 그린조달규정과 유럽연합 차원의 지침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방법을 숙지해야 함.

12) “Green Public Procurement in Europe 2006”의 국가별 성과분석에 따름.

- 특히 환경 관련 규정은 단기간에 숙지하기 어렵고 규정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정보의 업데이트가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각종 그린조달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린조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달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환경기준 및 적용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

나. 환경인증마크 획득, 환경기술 개발 및 투자

■ 유럽인들은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고 습관화 되어 있어 환경마크에 대한 신뢰가 높고 그렇지 못한 제품에 대한 선입견 또한 높은 편임.

- 그린조달 관련 규정에서도 에코라벨, 에너지 스타, EMAS 등을 획득한 물품 및 서비스를 우선 조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환경인증마크를 획득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함.
- 향후 그린조달 분야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환경기술 개발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여 환경기술 특허를 획득하고, 독자적인 환경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장기적인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다.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을 통한 진출전략 마련

■ 한·EU FTA 협정의 정부조달 부문에서는 현지(유럽) 실적기준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향후 상당기간 동안 과거실적을 고려하는 관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꾸준한 실적관리가 필요함.

- 유럽 그린조달시장 초기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진출이 유리하며, 이후 실적관리를 위해서는 유럽 각국에서 개최하는 전시회 및 박람회 등을 활용한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수집이 필요함.
- 유럽의 정부조달정책 및 환경기준은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 중이므로 변화하는 그린조달 관련 규정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지 담당자 및 업체와의 협업이 필수적임.

라. 유럽 그린조달시장에 대한 수요분석을 통해 계층별, 지역별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틈새시장을 공략

- 유럽은 국가별, 계층별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진출하고자 하는 시장의 언어 및 문화 등 해당 시장 수요분석을 통해 유망한 진출품목 및 진출전략 설정이 성공의 요건임.
- 환경관리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환경제품 등을 만드는 과정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확한 미래시장 수요 분석을 통하여 투자 효율성이 높은 품목을 선별해야 함.
- 중소기업의 경우 친환경제품의 높은 생산비용과 현지 네트워크 부족으로 판로 개척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틈새시장과 소규모 조달시장 공략이 유효할 것임.

마. 정부의 그린조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지원정책 마련

- 그린조달의 선두주자인 유럽의 경우 정부조달 부문에서도 ‘지속가능성’을 도입하여 EU 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다른 정책들과 융화되면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린조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환경과 사회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정부조달기준”을 마련하고 공공 부문부터 그린조달을 실천하여 민간부문에서 그린 구매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업의 지속적인 친환경제품 개발과 해외 그린조달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지원정책의 현실화가 시급함.
- 2010년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환경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 그린비즈 선정제도’를 마련하여 우수 녹색경영 실시 기업에 대해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 부문의 그린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구매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었으나, 선정기준이 엄격하여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